

#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

특허청 예규 제115호

## I 개 요

### 1. 목 적

본 지침은 특허청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적용 범위

본 지침은 특허청 특허고객번호 업무 수행 시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정보변경(경정), 정정 등 특허고객번호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함

### 3. 관련 법령

특허법 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, 실용신안법 제3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, 디자인보호법 제29조(고유번호의 기재), 상표법 제29조(고유번호의 기재)

| 관련 법   | 해당 법조문           | 시행규칙 조문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특허법    | 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 | 제9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)    |
| 실용신안법  | 제3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  | 제17조(「특허법 시행규칙」의 준용) |
| 디자인보호법 | 제29조(고유번호의 기재)   | 제14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)   |
| 상표법    | 제29조(고유번호의 기재)   | 제16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)   |

## ■ 관련 법령 조문

### ○ 「특허법」 제28조의2

#### < 특허법 >

**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**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,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,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○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조

#### < 특허법 시행규칙 >

**제9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)**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출원인
2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
3. 심사청구인
4. 삭제 <2006.9.29.>
5. 삭제 <2006.9.29.>
6. 정정청구인
7. 우선심사신청인
8.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

## 8의2. 재심사청구인

### 9. 심판청구인·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

### 10. 특허권자

### 11.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

### 12. 질권자

②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·서명·인감·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삭제<2001. 6. 30.>

2. 삭제<2001. 6. 30.>

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⑤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○ 실용신안법 제3조, 동 시행규칙 제17조(「특허법 시행규칙」의 준용)

○ 디자인보호법 제29조,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

**<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>**

**제14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)**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출원인
2.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
3.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
4. 우선심사신청인
5.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
6. 재심사청구인
7. 심판청구인,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
8. 디자인권자
9.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
10. 질권자

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,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, 서명 또는 인감,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종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⑤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종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 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

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## ○ 상표법 제29조,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

### < 상표법 시행규칙 >

**제16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)**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(본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등록 명의인의 경우는 제외한다)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가 성명·주소·서명·인감·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③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

④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

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자동 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, 이의신청인, 심판청구인,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(이하 “출원인등”이라 한다)가 법인인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## 1. 특허고객번호 개념

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,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임

### ▣ 특허고객번호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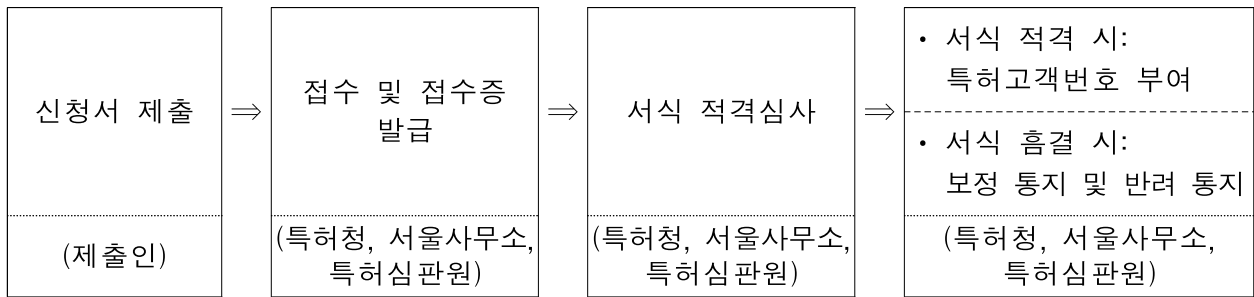
#### ○ 구성 체계(12자리)

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○      | ○○○○ | ○○○○○○○ | ○       |
| 제출인 구분 | 등록년도 | 일련번호    | 체크Digit |

#### ○ 특허고객번호 구분 체계

| 과거('07. 7. 이전) |                | 현재('07. 7. 이후) |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번호           | 구분명            | 구분번호           | 구분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              | 국내 상법상법인       | 1              | 국내법인               | 변경<br>( '07.07.01) |
| 2              | 국가기관 및<br>기타법인 | 2              | 국가기관               | 변경<br>( '07.07.01) |
| 3              | 각급시험연구기관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삭제<br>( '07.07.01) |
| 4              | 국내자연인          | 4              | 국내자연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              | 외국법인           | 5              | 외국법인<br>(외국국가기관포함) |                    |
| 6              | 외국자연인          | 6              | 외국자연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법인이 아닌<br>사단·재단    | 추가<br>( '07.07.01) |

## 2. 처리절차



## 3.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기준

### ▣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부서

- 출원과(고객지원실) : 우편신청(번호신청, 정보변경 등), 방문신청(번호신청, 정보변경 등) 건 처리
  -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: 온라인 신청(번호신청, 정보변경), 우편신청(번호신청, 정보변경 등), 방문신청(번호신청, 정보변경 등) 건 처리
  - 심판정책과 : 심판관련 우편신청 건 처리
- \* 예외적으로 방식부서는 특허법 제28조의2(고유번호의 기재) ③항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**그에게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함**

### ▣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기준

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
  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신청서 제출인별(국내자연인, 외국자연인, 외국법인 등)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**확인 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함**
- \* 특허고객번호는 정보제공인, 법인격이 없는 사단·재단 등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적격 여부 판단은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는 방식단계에서부터 판단함
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중복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**중복된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가짐**



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의 수정, 변경, 삭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함
  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
  - 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또는 「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」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서비스요청을 승인 처리함
  - 정보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
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가 발급 및 관리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정책과장 및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

## 1. 국내법인

### 1.1. 국내법인

#### ▣ 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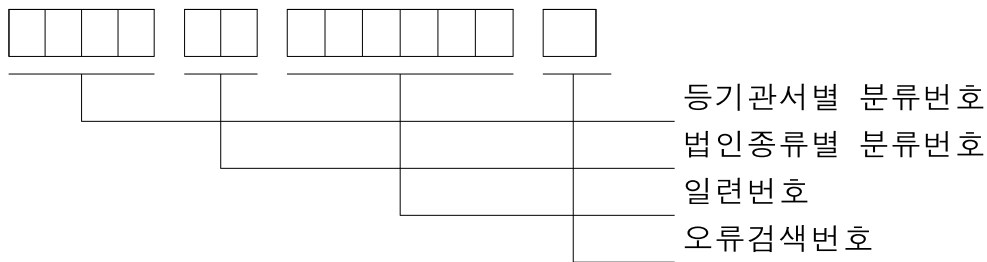
-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(권리능력)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(사단법인)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(재단법인)을 말함

#### ▣ 국내법인번호 발급 대상

- 법인이 설립등기\*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음

\*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(11~14), 민법법인(21~22), 특수법인(31~50),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(71)

\* (참고)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체계



- 상법상 법인(회사)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, 법인의 지점(또는 영업소)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,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함

## 1.2. 발급기준

### ▣ 국내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 항목         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한글명칭                  | 법인의 공식명칭을 국문으로 기재<br>* 주식회사, 합자회사, 재단법인, 유한회사 등 정확한 명칭 기재<br>[예] 주식회사 특허넷              |
| 영문명칭                  | 법인의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<br>[예] KIPO-NET inc.   |
|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| 법인등록번호 기재  |
| 사업자등록번호<br>(선택 기재 항목) |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<br>※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기재하는 항목으로, 서면 제출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은 아님 |
| 제출인 구분                | 국내법인   |
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       |
| 주소       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<br>* 반드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본사)의 주소 기재  |
| 시·도      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시·도 기재<br>[예] 서울특별시  |
| 행정정보사용<br>동의여부        | 동의 없이 가능: 법인등기사항증명서<br>동의: 사업자등록증명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 안함 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          |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(전자문서 제출 시) 사업자등록증명   |
| 첨부서류생략<br>색인정보        | [제출생략서류]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  |
| 인감·서명                 | 인감<br>* 법인은 서명 불가능   |
| 대리인 여부          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 |
| 변리사 신청 시              | 위임장 첨부   |

## 2. 국가기관

### 2.1. 국가기관

#### ▣ 국가기관

- 국가의사의 결정·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,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됨

#### ▣ 국가기관번호 발급 대상

-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대통령 직속기관, 국회, 법원, 지방자치단체(광역시, 기초자치단체) 및 그 소속기관, 국·공립학교,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
- 특허고객번호 명칭 표기 : 「대한민국(소속기관의 장)」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「자치단체명」
  - \*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
  - \*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사, 공기업 등은 국가기관번호가 아닌 국내법인번호로 발급함
  - \*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 이외에 육군본부(육군참모총장), 해군본부(해군참모총장), 공군본부(공군참모총장)도 국가기관번호발급이 가능함  
예) 대한민국(육군참모총장)
  - \* 국회의 경우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·국회도서관·국회에산정책처·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번호 발급 가능함
  - \* 법원의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번호발급 가능함

#### ※ 국·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

- 국·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§11①)이 승계함(발명진흥법 §10②)
- 이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고객번호(국내법인)를 부여받음

▣ 국가기관의 출원인 명칭 기재 유형

| 기관                | 표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                | 표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| 대한민국(행정자치부장관)<br>대한민국(국세청장)   |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| 대한민국(국방부장관)<br>대한민국(중소기업청장) |
| 중앙행정기관<br>소속기관    | 대한민국(행정자치부<br>청사관리소장)         | 중앙행정기관<br>소속기관    | 대한민국(교육과학기술부<br>국립중앙과학관장)   |
|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 |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 |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역자치단체<br>소속기관    | 대전광역시(한밭도서관장)<br>경기도(공무원교육원장) | 기초자치단체<br>소속기관    | 충청북도 영동군<br>(농업기술센터장)       |
| 기초자치단체<br>(시·군·구) | 충청북도 청주시                      | 기초자치단체<br>(시·군·구) |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             |
| 국회                | 대한민국(국회사무처장)                  | 법원                | 대한민국(법원행정처장)                |
| 국립 학교             | 대한민국(0000학교장)                 | 공립 학교             | 충청남도(천안인애 학교장)              |
| 광역 교육<br>자치단체     | 서울특별시(서울특별시<br>교육감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2. 발급기준

### ▣ 국가기관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  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한글명칭               | 대한민국(소속기관의 장)<br>[예] 대한민국(국방부장관)   |
| 영문명칭               | REPUBLIC OF KOREA(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)                  |
| 제출인 구분             | 국가기관   |
| 고유번호 또는<br>사업자등록번호 |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|
| 전화번호       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<br>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|
| 주소    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|
| 시·도   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시·도 기재<br>[예] 서울특별시  |
| 행정정보사용<br>동의여부     | 동의: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 안함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       |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|
| 인감·서명              | 발명기관의 인감   |
| 대리인 여부       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 |
| 변리사 신청시            | 위임장 첨부   |

## 2.3. 고려사항

### ▣ 국가기관의 별도 법인화

-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법인화가 된 국가기관의 처리방법
  - 서울대학교병원(1978) 등 대학병원, 전매청(1987), 철도청(2005), 국립의료원(2010) 등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함
- ⇒ 국가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허고객 번호를 재발급(국내법인)하고 기존번호는 '사용불능'으로 처리함

### ▣ 국내법인이지만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

#### < 지방자치법 >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,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,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, 군에는 읍·면을 두며, 시와 구(자치구를 포함한다)에는 동을, 읍·면에는 리를 둔다.

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두되,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·면·동을 둘 수 있다.

### 3. 국내자연인

#### 3.1. 국내자연인

##### ▣ 국내자연인

- 자연인이란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말임
- 국내자연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함

##### ▣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대상

-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
  - 주민등록법 개정으로,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와,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 → 주민등록 등·초본으로 발급 요건 확인 가능
  - 미성년자 등(미성년자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)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  -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  - 개인사업자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자연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-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
  -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
    - \* 관련 규정 : 「특허법」 제5조(재외자의 특허관리인)
  - 국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거주국의 정부기관 발행서류(성명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) 외에도, 거주지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·초본\* 제출 가능
    - \* 주민등록법 제19조(국외이주신고 등) : ②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



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다만,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**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** 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

## ■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특허관리인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국내 주소*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| 필요 없음 |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등·초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       | 필요    | 필요<br>(말소된 주민등록<br>번호로 가능)** | 재외국민등록부등본,<br>주민등록등·초본,<br>기타 국외 거주 확인 서류 등 |

\* 단,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\*\*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

## 3.2. 발급기준

### ▣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 |
|-------------|---|
| 한글명칭        | 한글은 공백 없이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<br>[예] 홍길동  |
| 영문명칭        |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<br>[예] HONG, Gil Dong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등록번호      | 주민등록번호 기재   |
| 제출인 구분      | 국내자연인   |
| 전화번호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|
| 주소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 |
| 시·도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시·도 기재<br>[예] 서울특별시   |
|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| 동의 :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 안함 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| 주민등록등·초본  |
| 첨부서류생략 색인정보 | [제출생략서류]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 |
| 인감·서명       | 인감, 서명 선택 첨부 가능   |
| 미성년자 여부     |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   |
| 대리인 여부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|
| 변리사 신청시     | 위임장 첨부  |

※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## 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 |
|---------|---|
| 한글명칭    | 한글은 공백 없이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<br>[예] 홍길동  |
| 영문명칭    |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<br>[예] HONG, Gil Dong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민등록번호  |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기재<br>[예] 영주권자<br>*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직접방문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출인 구분  | 국내자연인   |
| 전화번호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|
| 주소      |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소 기재   |
| 시·도     | 재외국민  |
| 첨부서류    |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주민등록등·초본, 기타 국외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감·서명   |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 |
| 대리인 여부  |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 |
| 변리사 신청시 | 위임장 첨부  |

## ▣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

○ 미성년자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(이하 '미성년자 등')인 경우  
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가능함

\* 특허고객번호 상의 법정대리인 항목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됨  
(별도의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)

- 미성년자 등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제출되어야 하며,  
법정대리인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인감 또는 서명을 갈음할  
수 있음(온라인 신청 시,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필요)
-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 법령이  
정한 서류 등)가 첨부되어야 함
-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에 출원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 
있어야 하며, 위임장에 기명날인은 법정대리인이 함

## 4. 외국법인

### 4.1. 외국법인

#### ▣ 외국법인

-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(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함)을 말함

\* 관련 규정 : 「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「법인세법」 제1조(정의)

#### ▣ 외국법인의 절차능력

- 외국법인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외국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
#### < 특허법 >

**제5조(재외자의 특허관리인)**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(이하 "재외자"라 한다)는 재외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)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(이하 "특허관리인"이라 한다)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(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\*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'영업소 등기(상법 제614조)' 및 '사업자등록(법인세법 제109조)'을 하여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

\*\* 반면, 국내에 비영업적 업무만 하는 (연락)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상업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. 다만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

#### ▣ 외국법인번호 발급 대상

-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,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, 외국국가기관은 외국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
<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> 【대법원규칙】

| 법인종류 | 법 률 근 거 | 법 인 분 류 | 분류번호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외국법인 |         | 주식회사    | 81   |
|      |         | 합명회사    | 82   |
|      |         | 합자회사    | 83   |
|      |         | 유한회사    | 84   |
|      |         | 기타      | 85   |

- 외국법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 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)를 기재하고, 사업자 등록증명(또는 고유번호증)을 첨부하면 특허관리인 없이 특허고객번호를 받을 수 있고 단독출원도 가능함
- 국내에 '영업소' 등기를 한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에서 국내 법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함
- 국내에 사무소 '주소'만 있고, 상업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,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 4.2. 발급기준

### ▣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 |
|----------|---|
| 한글명칭     |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<br>[예]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 |
| 영문명칭     |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<br>[예] ASD corporation   |
| 제출인 구분   | 외국법인  |
| 주소       |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기재<br>[예] 주소: 17301 Ridgeland Avenue, Tinkley Park, Illinois 60477, U.S.A<br>적절한 기재: 미국 일리노이주 60477, 틴클리파크 리지랜드 애비뉴 17301<br>잘못된 기재: 17301 리지랜드 애비뉴 틴클리파크 일리노이 60477 미국 |
| 영문주소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 |
| 국적       |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   |
| 인감·서명    |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 |
| 첨부 서류    | 법인국적증명서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|
| 대리인 여부   |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 |
| 변리사 신청 시 | 위임장 첨부  |

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 |
|-------------|---|
| 한글명칭        | 법인의 공식명칭을 국문으로 기재<br>[예] 주식회사 필립스(국내영업소)  |
| 영문명칭        | 법인의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<br>[예] KIPO-NET inc.  |
| 사업자등록번호     |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)를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출인 구분      | 외국법인  |
| 전화번호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|
| 주소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<br>* 국가명의 경우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 기재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적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<br>*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정보사용 동의여부 | 동의: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안함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|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<br>사업자등록증명(또는 고유번호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생략 색인정보 | [제출생략서류] 사업자등록증명  |
| 인감·서명       | 인감  |
| 대리인 여부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|
| 변리사 신청 시    | 위임장 첨부  |

※ 국내에 ‘영업소’ 등기를 한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국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(동의 없이 열람 가능)



## 5. 외국자연인

### 5.1. 외국자연인

#### ▣ 외국자연인
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함

#### ▣ 외국인의 권리능력

##### < 특허법 >

제25조(외국인의 권리능력)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.

1.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
2.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
3.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(이하 "조약"이라 한다)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

-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

#### ▣ 외국자연인번호 발급 대상

-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

-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(이하 "재외자"라 한다)는 재외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)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(이하 "특허관리인"이라 한다)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
\* 관련 규정 : 「특허법」 제5조(재외자의 특허관리인)

-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

-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

## 5.2. 발급기준

### 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 항목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|
|----------|--|
| 한글성명     |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,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기재<br>[예] 【성명의 국문표기】 케네디 존 에프 |
| 영문명칭     |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<br>[예] 【성명의 영문표기】 KENNEDY, John F                   |
| 제출인 구분   | 외국자연인  |
| 전화번호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 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    |
| 주소       | 국내 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<br>[예] 미국 1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웨스트 버나도 드라이브 456  |
| 영문주소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<br>* 국가명의 경우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 기재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적       |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<br>*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| 국적증명서, 기타 성명·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|
| 인감·서명    |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제출 안함   |
| 대리인 여부   |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|
| 변리사 신청 시 | 위임장 첨부   |

## ▣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|
|----------------|--|
| 한글성명           |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,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기재<br>[예] 【성명의 국문표기】 케네디 존 에프       |
| 영문성명           |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<br>[예] 【성명의 영문표기】 KENNEDY, John F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출인 구분         | 외국자연인  |
|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|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 |
| 전화번호   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           |
| 주소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국내주소 기재  |
| 영문주소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영문주소 기재<br>*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문과 역순으로 주소를 기재<br>[예] 미국 1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웨스트 버나도 드라이브 456 |
| 국적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국적 기재<br>* 국적의 경우는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확인 후 처리함  |
| 행정정보사용<br>동의여부 | 동의: 국내거소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 안함 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 서류          | 국내거소신고증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기타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* 국내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 |
| 첨부서류생략<br>색인정보 | [제출생략서류]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|
| 인감·서명          | 인감 또는 서명 등록 가능함  |
| 대리인 여부   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 |
| 변리사 신청 시       | 위임장 첨부   |

## 6.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

### 6.1.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

#### ▣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

-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 및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,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,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함

#### ▣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번호 발급 대상

- 출원심사의 청구인,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서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은 불가능함

\* '07. 7.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에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하지 않았으나, '07. 7. 이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하고 있음

#### < 특허법 >

제4조(법인이 아닌 사단 등)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, 특허 취소신청인, 심판의 청구인·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·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.

-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

## 6.2. 발급기준

### ▣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

| 확인항목           |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한글명칭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을 국문으로 기재<br>[예] 꿈의 공동체   |
| 영문명칭           | 공식명칭을 영문으로 기재<br>[예] Dream Community  |
| 제출인구분          |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  |
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함   |
| 전화번호           |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(-)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기재<br>[예] 【전화번호】 02-123-4567 |
| 주소 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주소 기재   |
| 시·도            | 첨부서류 상의 시·도 기재<br>[예]서울특별시  |
| 행정정보사용<br>동의여부 | 동의: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열람(첨부서류 생략가능)<br>동의안함: 첨부서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서류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명   |
| 인감·서명          | 비법인 사단·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   |
| 대리인 여부         | 대리인 없이 신청 가능  |
| 변리사 신청 시       | 위임장 첨부  |

## 7. 동일출원인 검색 및 처리 절차

### 7.1. 동일출원인 검색 방법

| 제출인      | 검색방법   |
|----------|--|
| 국내자연인    | 1. 주민등록번호 검색<br>2. 성명 검색<br>: 성명이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파악<br>3. 주소 검색<br>: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파악   |
| 국내법인     | 1. 법인등록번호 검색<br>2. 명칭 검색<br>: 명칭이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<br>3. 주소 검색<br>: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<br>(법인의 지점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반려처리)          |
| 외국자연인/법인 | 1. 영문 명칭(성명) 검색<br>: 명칭(성명)이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며 대소문자 교차 검색,<br>명칭(성명) 띄어쓰기 단위로 검색하여 동일 여부를 파악<br>2. 영문주소 검색<br>: 영문주소가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며 대소문자 교차 검색 |
| 국가기관     | 1. 명칭 검색<br>: 명칭이 동일한 정보인지를 파악<br>2. 주소 검색<br>: 주소가 동일한 정보를 기준으로 동일법인 여부 파악<br>3. 발명기관의 명칭변경 정보를 파악하여 변경 전 명칭으로 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동일출원인 검색을 통하여 기존의 특허고객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려통지하며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(경정) 신청을 통한 정보 변경 통지함

- 동일한 검색 후 미등록번호가 검색된 경우
  - 1999년 이전에 직권 부여된 특허고객번호로써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한 후 출원번호란에 '99년 이전 출원건의 출원번호'를 기재하여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면 등록번호로 처리함

### 7.3. 중복 특허고객번호 및 오류번호 관리

-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잘못 부여된 특허고객번호 발견 시 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센터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.
  - 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또는 「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」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요청을 승인 처리함
  - 정보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
- \* (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)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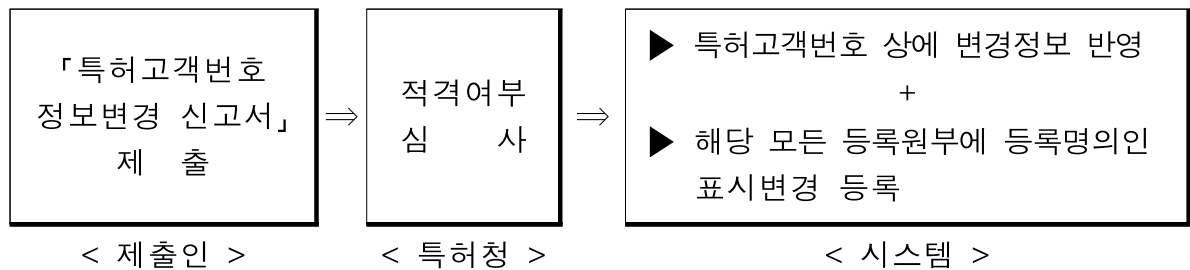
## 1.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

-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, 주소, 서명, 인감, 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,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를 말함

## 2.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 처리절차

### ▣ 2008. 1. 1. 이후 신규설정등록된 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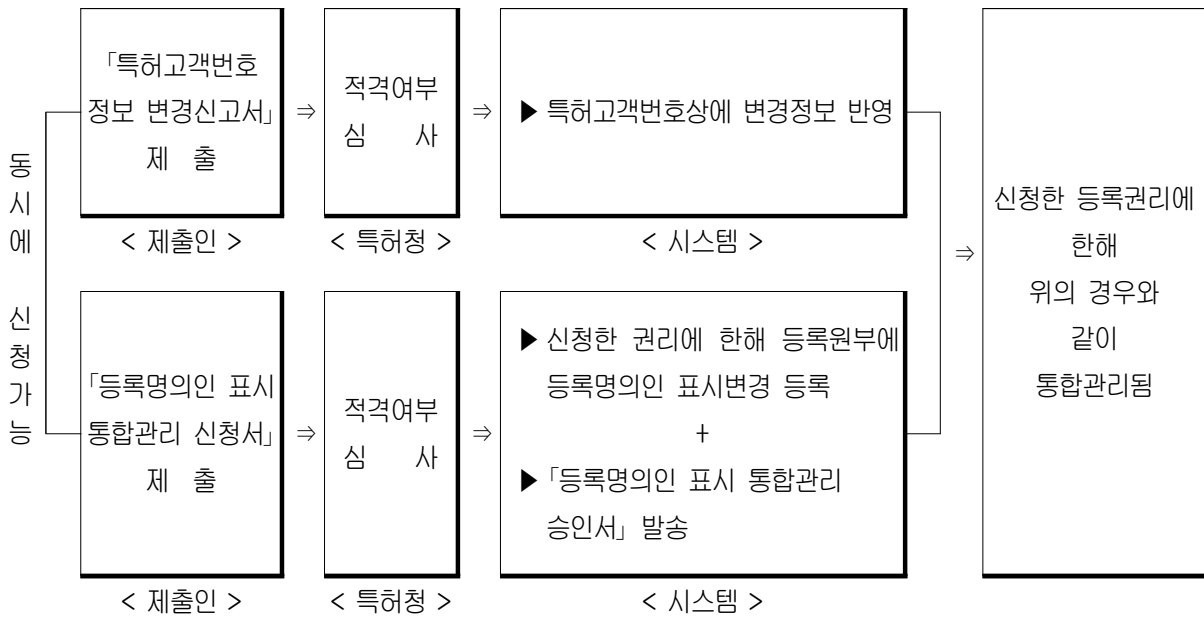
- 「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」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 변경함



### ▣ 2007. 12. 31.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

- 「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」가 제출되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해당번호에 변경정보를 반영함
- 「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」에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,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,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함
  - 이후부터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됨
  - 단,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 관리됨





## ■ 지번주소 또는 일괄 주소전환 된 건의 도로명 주소변경 신청

-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일괄전환 된 건으로 주소 전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 요청하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 가능
  - 새주소 사이트(www.juso.go.kr)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 확인 후 처리
- 출원인이 동일 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처리

## ■ G4B를 통한 출원인정보변경 신청 처리

-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플러스(G4B)\*를 통하여,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을 신청할 경우 「전자정부법 제3조」에 의하여,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 신청 처리
    - 변경항목은 특허고객번호(국내법인)의 명칭, 주소 정보
- \* 기업지원플러스(G4B):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기업전용 포털사이트(www.g4b.go.kr)

### 3. 관련법령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 관련 규정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(경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·주소·서명·인감·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</li> <li>- 등록명의인의 주소·서명·인감·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</li> <li>- 동일 주소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할 경우</li> </ul> |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조,<br>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,<br>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4조,<br>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16조,<br>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」 제13조,<br>「도로명주소법」 제20조,<br>「전자정부법」 제3조 |
| 특허고객번호 정정                    |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 |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조,<br>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,<br>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」 제14조,<br>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16조  |

### 4.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

- 정보 변경(경정) 또는 정정 신청 시(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)
  -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 신고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)
    - 정보변경 시 신청서 구분 란의 ‘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(경정)’을 선택함
    - 정정 신청 시 신청서 구분 란의 ‘특허고객번호 정정’을 선택함
  - 정보변경(경정)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)를 제출함
  - 대리인(법정대리인 포함)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

■ **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시**(「도로명 주소법」 제20조 및 제21조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 9)

- 동일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(방식 담당자가 주소 확인 후 변경 처리)

■ **출원인 정보변경(경정)시 신고사실 증명 서류의 유형**

- 국내자연인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기타증명서류
  - 국내법인 :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타 증명서류
  - 외국자연인 : 국적증명서, 우선권증명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기타 증명서류
  - 외국법인 :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·주소변경증명서,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 선언서, 또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
  - 국가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  - 법인이 아닌 사단·재단 : 사업자등록증명
- \* 다만, 제출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

## 5.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처리 절차

### 5.1. 공통

#### ▣ 권리능력 여부 확인

- 권리능력 여부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심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
-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구체적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처리 함
  - \*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자로 등록될 경우 **향후 권리이전은 물론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**
  - \* 자연인의 경우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, 법인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착오발생 우려가 높으므로, 확인이 필요함

#### < 주의사항 >

##### Ⓢ 개인 사업체(공업사, ○○센터 등)는 법인격이 없음

-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므로, 신청인이 제출한 **사업자등록증만 보고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됨**
  - \* 사업자 등록은 세금 납부 등과 관련된 영업신고에 불과함

##### Ⓢ 법인의 지점은 권리능력이 없음

- 상법상 법인(회사)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, 법인의 지점(또는 영업소)은 **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,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주소로 등록되어야 함**
- 국내에 영업을 하기 위해 상업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(또는 영업소) 또한 상법 제621조의 준거규정에 따라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여겨지며, 따라서 권리능력이 없음

##### Ⓢ ○○부, ○○도청, ○○시장, ○○시 ○○사업소 등은 법인격이 없음

- 국가가 권리자인 경우 '대한민국(소속기관의 장)'의 형태로 등록함
- 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 시, 군, 자치구로 등록함

## 5.2. 변경

### ▣ 출원인(등록명의인)의 동일성 여부 확인

-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보변경 전후의 (법)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함
-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·초본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,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
  - 개명에 의한 성명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개명 전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함
  - 재외국민<sup>1)</sup>이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제출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본에 기재된 주소로 변경 가능함
  -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「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」 제7조 및 「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인정<sup>2)</sup>함
  - 재외동포<sup>3)</sup>가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내거소지로 변경 가능함

1)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

2) 동 규정은 부동산등기를 위한 규정이며, 지식재산권의 경우 외국인(외국법인)의 성명(명칭)과 주소만으로 등록명의인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기재는 불인정하여야 함

3)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- **국내법인의 경우**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**법인등록번호,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**
  -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고객번호에 대한 정보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종전 명칭과 주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함
  -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동 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최근 정보로 갱신함
  
- **외국법인의 경우** '해당주무관청의 명칭·주소변경증명서' 또는 '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선언서' 등을 토대로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
  -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
  - 법인의 대표자가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선언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하거나, 공증인이 자국 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칭 또는 주소 변경내역을 확인하였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인정함
  - \* 이 경우,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, 특별히 증명서 또는 공증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유효기간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함
  
- **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경우**,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(본점의) 명칭 또는 주소 변경내역과 변경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

## < 주의사항 >

- Ⓢ **합병에 의한 명칭변경은 법인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으로 신청한 경우 반려함**
  -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회사의 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으로 주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체의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**권리이전등록대상임**
- Ⓢ **합병이 아닌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(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,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)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가능함**
  - 회사조직의 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
  - 이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일단 해체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이종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서, 조직변경 전후를 통하여 실제적인 권리의무주체의 동일성은 유지됨
  - 따라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변경 전후의 조직의 형태 및 명칭,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수리함

## 5.3. 경 정

### ▣ 출원인(등록명의인)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

- 특허고객번호 정보경정신청은 출원인의 성명(명칭),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등의 표시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임
-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경정 신청을 인정할 경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, 신청 시에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경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법인의 주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경정 전후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
  - 상법상 법인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여야 하나(상법 제171조), 최초 특허고객번호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주소를 확인한 후 수리함
  -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해당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경정함
- 외국(법)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에 있어 음역상의 차이를 경정 신청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단순한 음역상의 차이일 뿐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함
  - ‘인크’를 ‘인코포레이티드’로, ‘카부시키카이샤’를 ‘가부시기가이샤’로 변경하는 경우 등(해당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타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, 명칭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)
-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를 동 사업체의 대표자로 경정 신청한 경우 최초 특허고객번호 부여 시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정 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



- 법인격이 없는 학교명을 재단법인명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의 정관 등을 토대로 동 학교의 운영 주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인정함
-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국내지점(영업소)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본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여 경정처리 함

## 6. 재검토기한

특허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61호, 2011. 11. 30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68호, 2012. 10. 31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74호, 2013. 12. 30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86호, 2015. 12. 3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93호, 2016. 10. 4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10호, 2019. 12. 20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15호, 2020. 7. 28.>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